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천현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 가.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 나.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 4415호 1991. 12. 14)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지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세조례 제28조(부과지역의 고시)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부과지역
 - 시지역 : 136동 중 120동
 - 군지역 : 1,383리동 중 430리동

5. 검토의견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로 시장,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던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충청북도세조례 제28조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방서 및 용소방대가 설치된 지역 및 소방차가 20분이내 출동하여 전화가 가능한 지역인 시지역 136동중 120동, 군지역 1,383리동중 430리동을 부과지역으로 선정 고시하는 것으로써 본 고시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물론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되고, 험조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도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현황을 보면은 영동군이 추가로 15개 리, 등이 추가가 되었고, 판 데 보다도 형평을

잃은 거같은 많은 리·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알기로는 영동에는 지금 양강면이나 상촌면 같은 데에는 소방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양강면 또는 상촌면도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내가 실지 알고 있기는 20분 아니라 30분에도 도달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을 물론 판 군에도 있겠지만 제가 판 군에는 상세히 모르겠고 영동군 15개 지역을 추가한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